

학과(전공)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 제정 : 2014. 11. 6.
- 개정 : 2018. 3. 1.
- 개정 : 2019. 6. 18.
- 개정 : 2020. 3. 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과(전공) 학생 정원조정을 위한 학과(전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평가대상 학과(전공)는 본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설학과(전공)는 편제완성 후 2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 2020.3.13.>

제3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매학년도 1학기 초(4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 2020.3.13.>

② 학과(전공)별 평가점수는 별지1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 2020.3.13.>

제4조(정원조정대상 선정) 학과(전공) 정원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 2020.3.13.>

1. 제3조에 의한 평가 결과 2년 연속 또는 4회 이상 하위 30%에 속하는 경우
2. 당해 연도 입시총원에서 미달이 발생했거나 익년도 입시총원에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학특성화 등 본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과(전공)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정원조정 절차) ① 학과(전공) 정원조정 및 신설, 통·폐합은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② 학과(전공) 정원조정 및 신설, 통·폐합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전공) 정원조정 및 신설, 통·폐합 대상 선정 및 계획(안) 수립
2. 대상 학과(전공) 의견 수렴
3. 대학발전위원회 심의
4.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5. 이사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
6. 결과 통보 및 관련 부서 후속 조치 시행

제6조(학과 및 전공 최소 정원) 학과(전공)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입학정원은 30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학과 폐지 통합 등에 따른 교직원 처리) ① 학과 폐지 및 통합 등으로 교직원이 폐직

5-0-14 학과(전공)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또는 과원이 된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정관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교직원을 면직처리 한다. <개정 : 202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직처리 대상 교직원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기타 실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 2020.3.13.>

③ 제1항에 따라 교원을 처리함에 있어 본교 내 다른 학과의 전공 강의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환배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020.3.13.>

④ 제3항의 규정의 경우 전환배치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당해인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교원업적평가 성적 등이 저조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환배치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전공전환 신청)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교원이 당해인의 전공을 전환하여 다른 학과의 신설을 원하는 경우 총장에게 전공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공 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설학과 설치의 취지 및 전망
2. 신설학과의 운영방안
3. 신설학과의 교육계획
4. 전공전환 내용 및 방법
5. 기타 전공전환 입증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공전환을 신청한 자가 그 내용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직된다.

제9조(재학생에 대한 처리) ①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의 학생은 입학 시의 모집단위 소속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 기간은 학칙의 부칙에서 정하는 기간을 따른다.

②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의 재학생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하며, 세부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칙에 따라 본래 전과가 허용되지 않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③ 폐지가 결정된 모집단위의 재학생이 인접대학 동일전공으로의 전학을 희망할 경우, 인접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전학을 추진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된 대학에서 허용할 경우 전학이 가능하다.

④ 모집단위가 통합되었을 경우, 통합되기 이전 모집단위 소속의 학생은 통합된 모집단위 소속의 학생이 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발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0-14 학과(전공) 정원조정에 관한 규정

[별지 1]

1. 평가지표별 정의

구분	평가지표명	배점	평가지표별 점수 산출방법	비고
입학	입시경쟁률	10	최근 3개년도 입학경쟁률 표준점수 기중평균	기중평균은 당해연도 60%, 전년도 30%, 전전년도 10%로 산출
	신입생총원율	30	최근 3개년도 신입생총원율 표준점수 기중평균	
재학	1차재학생총원율	20	최근 3개년도 1차재학생총원율 표준점수 기중평균	
	2차재학생총원율	10	최근 3개년도 2차재학생총원율 표준점수 기중평균	
취업	취업률	30	최근 3개년도 취업률 표준점수 기중평균	
합계		100		

2. 평가지표별 표준점수 산출방법

평가지표명	평가지표별 원점수 산출	평가지표별 표준점수 산출	기준일
입학경쟁률	정원내총지원자수/정원내모집인원	$10 * [(학과입학경쟁률 - 대학입학경쟁률) / 입학경쟁률표준편차] + 50$	당해연도 3/1일
신입생총원율	$(정원내입학자수 / 정원내모집인원) * 100$	$10 * [(학과신입생총원율 - 대학입학경쟁률) / 신입생총원율표준편차] + 50$	당해연도 3/1일
1차재학생총원율	$(정원내재학생수 / 편제정원) * 100$	$10 * [(학과재학생총원율 - 대학재학생총원율) / 재학생총원율표준편차] + 50$	당해연도 4/1일
2차재학생총원율	$(정원내재학생수 / 편제정원) * 100$	$10 * [(학과재학생총원율 - 대학재학생총원율) / 재학생총원율표준편차] + 50$	직전연도 10/1일
취업률 지수	$(취업자수 / 취업대상자수) * 100$	$10 * [(학과취업률 - 대학취업률) / 취업률표준편차] + 50$	직전연도 12/31일